

도시관리계획(테헤란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263호(2025. 5. 8.)로 결정(변경) 고시된 테헤란로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구단위계획(경미한 사항)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5월 14일

강 남 구 청 장

I. 결정(변경)취지

- 「테헤란로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대치동 890-16, 890-20번지에 대한 높이계획을 지구단위계획(경미한 사항) 결정(변경) 하고자 하는 사항임.

II.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없음)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 없음)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 없음)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m ²)	비고
기정	테헤란로 지구단위계획구역	강남구 역삼1동, 역삼2동, 삼성2동, 대치4동 일원	959,160	서고시 제1994-189호 (1994. 6. 15)

②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없음)

③ 가구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1. 가구 및 공동개발 결정조서(변경 없음)

2.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건축물의 용도계획 결정조서(변경 없음)

나. 건축물의 밀도 결정(변경)조서

1) 건폐율(변경 없음)

2) 용적률(변경 없음)

3) 높이계획(변경)

가) 건축물 높이 결정(변경)조서

건축물 높이계획(변경)

구분		계획내용				비고
		기정		변경		
		기준높이	최고높이	기준높이	최고높이	
상업 지역	테헤란로 간선부	90m	120m	108m	144m	대치동 890-16, 890-20번지에 한함

높이계획 변경사유서

구분	위 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대치동 890-16, 89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높이 계획 변경 (경미한 변경 범위 20%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합리적이고 유연한 토지이용을 고려한 건축계획에 따라 높이 완화

※ 상기사항 외 지구단위계획 변경 없음

3. 기타 사항 결정조서(변경 없음)

4. 특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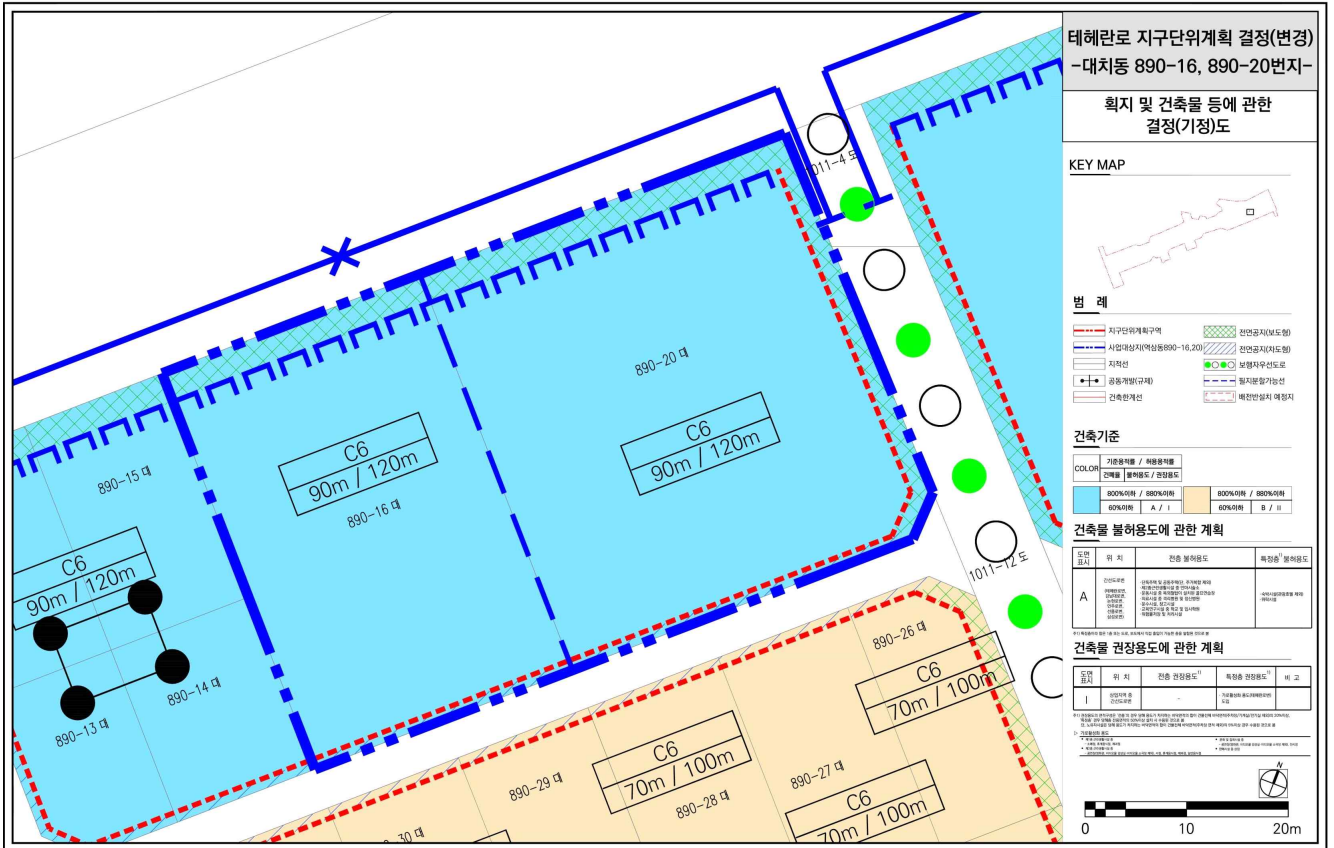
5. 용도지역 조정가능지 결정조서(변경 없음)

④ 경미한 사항에 관한 계획(권한 : 구청장)(변경 없음)

Ⅲ. 관계도면: 붙임 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등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http://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기정)도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